##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25 발의연월일: 2024. 10. 16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남근·김준형

박홍배 · 송기헌 · 송재봉

이학영 · 임광현 · 전현희

추미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,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 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,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도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 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.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로 이어 일지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 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

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,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충전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·관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(생 략)	전용주차구역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	②
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	
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	
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	
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
	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충
	전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유지・관리 행위 등을
	하는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
	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
	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,
	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신고 사
	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
	<u>야 한다</u>
③ ~ ⑫ (생 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◎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
	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
	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	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

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